

등록번호	건강관리과-4348
등록일자	2016.3.9.
결재일자	2016.3.9.
공개구분	부분공개

★주무관	감염병관리팀장	건강관리과장	보건소장	
정진아	상영규	신용준	03/09 홍혜정	
협조	검진팀장 건강도시과장	강정원 임택		

2016년 외국인 결핵 건강검진 추진 계획



보 건 소
건강관리과

2016년 외국인 결핵 건강검진 추진 계획

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 고위험국가(18개국)를 대상으로 결핵건강검진을 강화하여 결핵 예방 및 직·간접적 감염을 막기 위함

I 추진근거

- 2016년 국가결핵관리 지침(질병관리본부)
- 2016년 결핵관리사업 계획(건강관리과-5947)
- 고위험국가(18개국) 외국인대상 결핵검진 시행안내(서울시 생활보건과-4847)

II 추진배경

■ 외국인 결핵 신고환자 증가 추세 (단위 : 명(%))

구 분	2011	2012	2013	2014
전 체	1,213	1,510	1,737	1,858
서 울	391 (32.2)	465 (30.8)	533 (30.7)	535 (28.8)

<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(질병관리본부, 2014)>

■ 2015년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(단위:명)

구 분	총 계	중 국	네 팔	몽 골	키르기스탄	필리핀	미얀마
중 구	19	13	2	1	1	1	1

※ 2015년 전국에서 진단된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 27명중 19명이 중구에서 치료 중

■ 국내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(18개국) 외국인 대상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결핵 확인서 제출 의무화(시행일: 2016년 3월 2일)

※ 결핵 고위험국가(18개국) : 중국, 스리랑카,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, 태국, 베트남, 인도, 네팔, 필리핀, 파키스탄, 몽골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미얀마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키르기스탄, 동티모르

■ 결핵이 확인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국내 결핵 감염 감소화

III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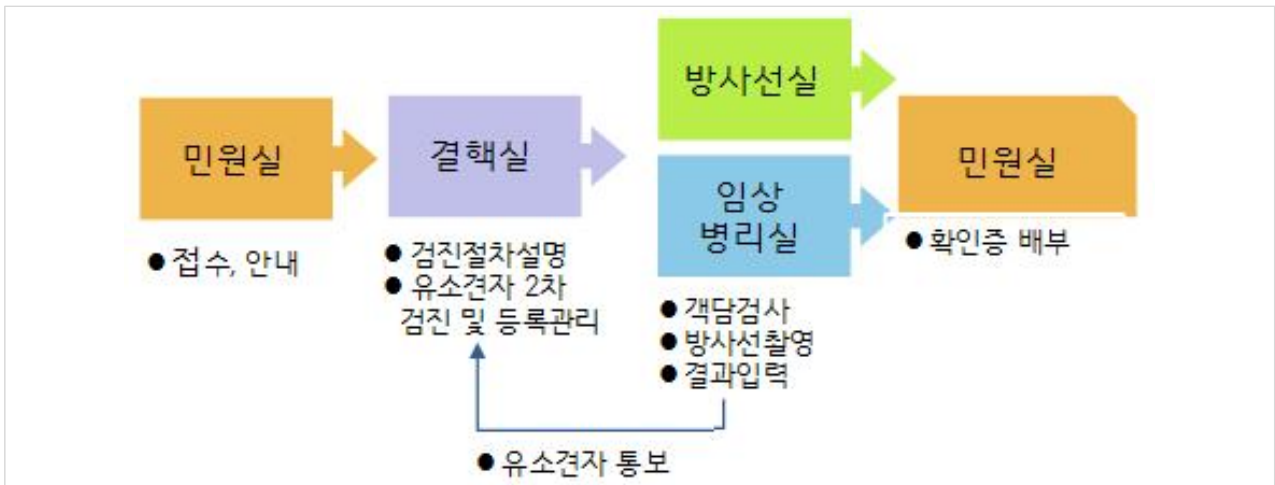
-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장기 등록증을 신청시 결핵검사 의무화
- 결핵 발병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

IV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6년 3월 2일부터
- 사업대상 : 국내체류 중인 18개국 결핵고위험 국가 외국인
- 사업내용
 - ▶ 국내 체류 외국인 결핵검진 : 비자 및 체류연장 신청시
 - ▶ 결핵중점관리 대상자 재입국시 결핵검진 및 치료
- 사업추진 체계도



■ 검진절차



V 세부추진 계획

■ 검진대상 :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

- ▶ 국내 체류 외국인 결핵검진 : 비자 및 체류연장 신청시
- ▶ 외국인 등록증 연장 신청자

※ 검진비용을 관내 예산으로 집행하며, 관내 여행대행업체 등이 밀집되어 있어 민원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움

■ 검진방법

- ▶ 흉부 X선 및 객담 도말검사(afb smear) 동시 실시
- ▶ 결핵 유증상자는 핵산증폭검사, 객담 배양검사 추가 실시
- ▶ 검사결과 결핵확인서 발급, 검진결과 판정 등 「외국인 결핵관리 지침」에 준해 시행

■ 검진비용 : 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 예산에서 부담

■ 발급서류 : 결핵검진 확인서(수수료 1,500원)

※ 중구보건소 수가조례(2조 2항)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로 준함

VI 행정사항

■ 협조사항

구 분	내 용
보건민원팀	- 외국인 결핵건강검진 접수 및 민원안내
검진팀	- 객담 검사 및 대한결핵협회에 객담 의뢰 - 흉부 X선 촬영
대한결핵협회	- 의뢰된 객담 검진 및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객담 결과 통보
서울시	- 외국인 건강검진 추진계획 시달 - 자치구 예산 부족시 재배정(하반기)
질병관리본부	- 외국인 결핵관리 지침 안내 - 지역보건 정보의료시스템 의뢰 연계

VII 소요예산 : 17,000천원

구 분	산 출 내 역	예 산 액	비 고
사무관리비	결핵검진 확인서 인쇄비	200천원	국비(50%) 시비(33%) 구비(17%)
의료 및 구료비	검진비2,800원*30건*20일*10개월	16,800천원	

■ 예산과목

- ▶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, 감염병 예방관리사업, 국가결핵예방사업(보조)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- ▶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, 감염병 예방관리사업, 국가결핵예방사업(보조),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

VIII 기대효과

- 체류비자 변경 및 외국인증 발급시 결핵검진을 강화함으로 외국인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
- 외국인의 결핵전파 위험성 경감 및 결핵예방 강화

IX 향후계획

- 3월 15일 이후 : 결핵검진 확인서 변경서식 적용
- 3월 말 :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결핵검진확인서 연계

- 붙 임 1. 외국인결핵관리지침 1부
2. 결핵 검진 확인서 변경서식 1부. 끝.